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

(최재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27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4월 06일

발 의 자: 최재란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강석주, 김인제,
박강산, 박철성, 봉양순,
아이수루, 이영실, 임규호,
전병주 의원(10명)

1. 제안이유

- AI·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비판적 사고력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AI 기술의 일상화로 정보를 단순히 습득하는 것을 넘어 이를 비판적으로 읽고 판단하는 역량이 미래 핵심 능력으로 요구되고 있음.
- 이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의 읽기 역량 및 디지털 문해력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고, 학교도서관이 단순 자료 보관 공간을 넘어 AI 시대 교수·학습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자료 등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교육감 등 학교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 실적 평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마.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바. 학교도서관 운영 기준, 시설·장서 관리 및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사. 학교도서관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문화함(안 제9조).
- 아.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자.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 협력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 차.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및 기관,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학교도서관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독서문화 진흥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독서 생활화를 촉진하고, 학교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반으로 학생의 지적·정서적 성장과 지속적인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이 독서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 자료 확충 및 관리,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 등(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 전문 인력 배치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의 디지털 문해력 함양을 위한 독서교육 환경 조성
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독서활동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
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5.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활동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현황 및 학생의 독서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학교급별·발달단계별 권장도서 선정 및 안내
3. 교과와 연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디지털 기반 독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5. 교원 및 사서교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6. 독서 동아리 등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독서 활동 지원
7. 공공도서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독서 축제, 독서 캠페인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행사
8. 그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학교도서관 운영) ① 학교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지식 정보 제공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 시설·설비의 확충 및 개선
2. 장서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디지털 자료 확충
3. 사서교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학교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③ 학교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은 개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자료의 수집·폐기, 행사 및 활동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서교사 등 및 자원봉사활동) ① 교육감은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자는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의 고유업무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조적인 역할에 한한다.

제11조(학교도서관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도서관 현장 방문 및 운영 컨설팅 지원
2. 학교도서관 관계자 간 네트워크 운영 및 지역 간 교류·협력
3. 사서교사·사서 미배치 학교에 대한 도서관 운영 및 독서활동 지원
4. 우수 독서교육 사례 발굴·확산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문화 진흥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과 학교장은 독서문화 진흥 및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대학 등 그 밖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소관부서(학생역량·혁신교육과)에서 「2026학년도 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학교도서관 현황조사,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기반 독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교원 및 사서교사 연수,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운영 등 조례안에 규정된 주요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이설화

☎ 02-2180-7953

e-mail : sseol789@seoul.go.kr